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.

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,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

대통령권한대행
국무총리 황 교 안 인

2016년 12월 27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국무위원
행정자치부장 (법무부 소관) 홍 윤 식

●법률 제14471호

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(仲裁)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중재”란 「중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.
- 2. “중재산업”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(審理)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,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.
- 3. “분쟁해결시설”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,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4. “중재산업 진흥기반”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, 전문 인력, 법령, 제도, 연구, 홍보 등을 말한다.

제3조(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

행하여야 한다.

1.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
2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4.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)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·운영
2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
3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5조(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)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·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분쟁해결시설의 홍보
2.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6조(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)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,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교육 주관기관”이라 한다)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
2.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
-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2.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3.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
- ⑤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,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)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(이하 “국제중재”라 한다)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- 2.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
- 3. 해외설명회·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
- 4.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8조(재정 지원)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
- 2.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
- 3.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

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
- 2. 제7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) 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·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·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제정이유

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(仲裁)를 유치하거나 국내·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·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, 중재의 심리(審理)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,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이 취약한바,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,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(제3조)
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·유치, 분쟁해결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
나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(제4조)

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,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(제6조 및 제8조)

- 1)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
- 2)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,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,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
라.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(제7조)

- 1)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.
- 2)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, 해외설명회·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

**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황 교 안 ㉠**

2016년 12월 27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국 무 위 원 홍 윤 식
행정자치부 장관 (법무부 소관)

●법률 제14472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법원 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지방법원 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지방법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중앙지방법원”을 “서울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지방법원 본원”을 “회생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“지방법원본원”을 각각 “회생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.